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김진규*
김현지**

-
- I. 서 fhs
 - II. AEO 도입배경 및 현황
 - III. AEO 인증에 따른 기업의 혜택
 - IV. AEO 인증제도의 도입시 기대효과
 - V.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AEO인증제도,통관,안전,세계관세기구

I. 서 론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그동안 화물의 신속한 반출입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중심을 두었던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무역안전과 정확성으로 변화하면서,

* 관세법인 한영 국제지사 대표관세사, 주저자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개정 교토 협약 및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인 『SAFE Framework』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도입된 AEO 제도는 검사비용 축소, 신속통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일부 다국적 기업이 AEO 인증을 무역거래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있어 필수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EU(27개국) 등 전 세계 45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 중이며, 국가 간의 상호인정협정(MRA)도 2009년까지 7개가 체결되는 데 그치던 것이 2010년에만 6개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미국-중국, EU-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상호인정협정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도입한 제도임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12월 현재 국내 AEO 인증업체가 60개 업체(95개 부문)에 불과하며, 상호인정협정도 2010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3개 국가와 협정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소득 대비 대외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92.3%(2008년 기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 AEO 기업 인증과 국가차원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확대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이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FTA와 더불어 대비해야 하는 제도가 최근 관세 행정의 주요 테마로 떠오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¹⁾이다. AEO는 무역 안전과 무역 거래의 원활화라는 두 가지 상충(trade off)된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세계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교란시키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AEO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2009년 4월 도입된 이유로 기업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AEO 인증시 혜택 및 기대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AEO 신청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학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란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를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함.

II. AEO 도입배경 및 현황

1. AEO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및 도입배경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로써,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²⁾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써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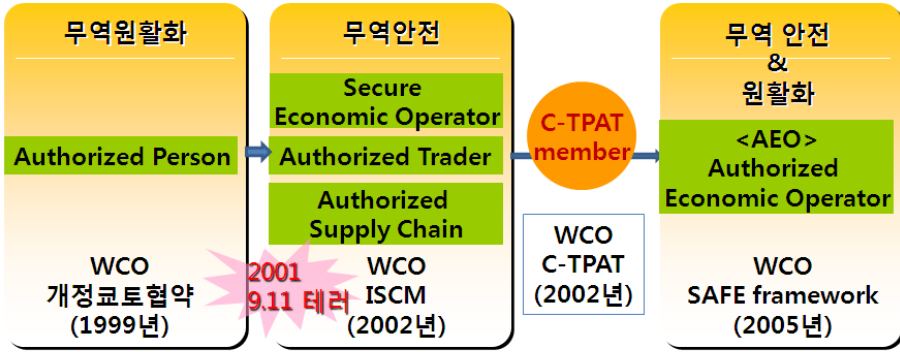
AEO 제도의 도입은 수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도입 배경으로는 첫째, 2001년 9.11 테러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전반의 보안 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의 이행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미국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³⁾의 경우 이를 통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보안기준을 제대로 준수함으로써 새로운 교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수출입 안전관리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즉,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와 방사능 탐지장비 및 RFID와 화물 추적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⁴⁾

2)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세관기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무가 부여된 독립적인 정부 간의 기구로서 세관업무에 적격성이 있는 유일한 정부 간의 세계적인 조직이다.

3) C-TPAT(Customs and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 약자임.

4) 김진규,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 TSPL Press, 2010.11, pp.13-14.

〈그림 1〉 AEO 제도의 도입배경



2) 도입의 필요성

가.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세계관세기구는 국가 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 (Security)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촉진(Trade Facilitation)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수년 간 광범위하고 치밀한 논의 끝에 전 세계 169개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표준규범을 만들어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는 명칭으로 전 회원국이 참석한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 회원국이 본 규범에 가입 후 36개월 이내에 자국의 실정에 맞게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이행 결의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30일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 법령인 고시 제정을 통하여 2009년 4월 15일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

9.11 테러 이후 각국의 세관당국은 행정역량의 중심을 안전에 두고 있으며, 근래 들어 중점 단속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전통적인 총기·마약류에서 식품·의약품·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AEO 제도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각국 세관당국이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하던 화물위주의 관리방식

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먼저 보는 방식으로 업체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AEO 인증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도 및 수출입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 수출경쟁력 제고 전략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의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통관지연으로 인한 물류 흐름의 지체현상이다. 외국의 수입업자나 우리 판매법인은 판매하려는 제품을 빨리 통관해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여야 하고, 생산법인은 자재 등을 적기에 통관해서 원부자재 공급을 통한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통관지연으로 인해 판매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납기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는 AEO 공인 또는 최소 안전기준 충족을 무역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AEO 공인업체는 거래선 확보에서 비(非)AEO 업체보다 유리하게 된다.

〈사례 1〉 미국 바이어의 요구 사례

- 미국 A사가 C-TPAT(AEO)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 수출업체인 B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입 환경 및 안전관리 수준 심사 요구
 - 현장 심사 일시 : 2009. ○. ○.
 - 참여 직원 : 미국 C-TPAT 심사관 2명

따라서, AEO 인증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AEO는 세계관세기구 산하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서 인증한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이자 국제적으로 안전한 기업으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AEO 인증을 통해서 국제 물류 공급망 상의 물류 흐름의 지체라는 글로벌 장벽을 해소하고 적기 물품 공급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 AEO 제도의 현황

1) 주요국의 AEO 도입 현황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EU(27개국) 등 주요 교역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한편 AEO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로는 페루, 칠레, 멕시코, 필리핀, 태국, 홍콩, 호주, 인도, 이스라엘, 세르비아, 캄보디아, 부탄, 미얀마, 산마리노, 안도라 등이 있다. AEO 제도의 근간이 되는 WCO SAFE Framework에 대해 이행의향서를 제출한 157개 국가들이 속속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국의 AEO 도입현황

국가	주요내용	시행시기
EU (AEO)	화물의 보안관리와 법령준수에 우수하다고 인정된 EU 역내 물류관련 사업자에게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물류보안과 수출입절차 원활화를 도모함.	'08.01
중국 (기업분류제도)	일반요건,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중국 해관총서에서 기업분류제도를 시행중임.	'08.4
일본 (AEO)	화물보안 관리 및 법령준수 체제 정비된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창고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화물관리 이행에 관한 요건 충족시 인증 가능함.	'07.10
미국 (C-TPAT)	무역물동량 및 테러증가에 대응하고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무역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차원에서 보안을 확보하고자 함.	'02.04

2) 우리나라의 AEO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AEO 제도 도입은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관세행정 측면에서 제고해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8.7%에 불과하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비율이 2008년에는 22.4%까지 상승했고, 검사물품의 약 91%가 非AEO업체 물품으로 AEO 대 非AEO의

검사비용은 약 10배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무역안전을 이유로 미국이 세관 통제를 강화하자 반테러 동맹의 다른 한 축인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도 행동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물류보안이라는 이름의 통관장벽에 가로막히는 불이익을 줄이고, 수출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핵심사항인 AEO 제도를 법제화하고 2009년 하부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3) AEO 상호인정협정 제도

가. 상호인정협정의 개념

세계관세기구는 상호인정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일방의 관세당국에 의해 적합하게 취해진 실행, 결정 및 공인을 타방의 관세당국이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인정협정 제도는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바, AEO 뿐만 아니라 FTA 등 국제간의 협정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제도이다. 즉, 상호인정협정이란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AEO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도입 배경

9.11 테러 사태 이후 관세행정의 주요 관심사가 국제화물 흐름의 원활화에 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안전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인 C-TPAT 제도를 시행하였고,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도 이와 유사한 AEO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출입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AEO 인증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기업에게는 수출입 통

관 시 화물 검사 생략 등 통관을 간소화 하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AEO 제도로 인해 공인되지 않은 기업들의 수출입 화물은 통관단계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더욱이 각 국이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AEO 제도 도입과 더불어 곧바로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및 발효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MRA에 참여 하고 있으며, 다른 AEO 도입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 EU 등 주요 경제대국을 협상대상으로 선정하여 MRA를 추진하고 있다.

다.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AEO 제도는 WCO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AEO 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① 국제적 신뢰도의 확보

각 국은 AEO 공인신청 대상 업체를 통상 자국에 소재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AEO 제도는 그 효력이 해당국에 한정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RA는 AEO 제도의 국제적인 시행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 업체라 하더라도 상대 국가와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수출입 통관 시 상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제3국 AEO 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EO 제도 시행 국가들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AEO 제도가 국제적 표준이 되면, 국제적인 신뢰 및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타 다른 물류보안인증제도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제무역환경에서 경쟁력 확보

2008년 12월 기준 AEO 제도 시행 또는 도입예정 국가의 무역규모가 전 세계 무역량의 63%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금액의 약 67%이며,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 국가들이 모두 AEO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전체 GDP의 70% 이상인 우리나라의 실정상 시사점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AEO 제도 도입 국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신속한 상호인정협정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③ 상호인정협정시 혜택 및 추진현황

첫째,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상호 호혜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추인(追認)되어 상대국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시 해당국 AEO 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되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관의 수입물품검사가 철저하여 검사로 지정될 경우 약 1주일 정도의 통관기간이 더 소요되고, 컨테이너 당 약 US\$300~US\$500 정도의 검사비용도 수입자가 부담한다. 2008년 4월 기준 미국의 AEO인 C-TPAT 공인업체와 비공인업체의 검사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각각 9%와 91%로서 공인업체의 수입검사 비율은 비공인업체의 10분의 1정도에 그쳤다.⁵⁾

둘째, 거래업체 관리를 요구하는 AEO 제도를 각 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거나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5) 『Cost/Benefit Survey Report of Results』, University of Virginia, 2007.

셋째, 외국 관세청의 해외 거래업체 방문심사에 의해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 소중한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관세청은 자국 C-TPAT 신청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기업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은 우리나라에도 2003년부터 2009년 6월 동 기간 동안 86회를 방문하여 수출업체, 보세창고, 보세운송인, 항만터미널 등을 심사한 바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AEO제도의 MRA 추진현황

대상국가	추진 현황
미국,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기준비교) 완료 - 2단계(상호방문검증) : 2009년 12월 방문 - 2010년 6월, MRA협정 체결 및 발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기준비교) 완료 - 2단계(상호방문검증) : 2010년 1월 방문 - 2010년 6월, MRA협정 체결 및 발효
EU, 중국, 일본,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 - 2011년경 MRA협정 체결(예정)

Ⅲ. AEO 인증에 따른 기업의 혜택

1. AEO 인증시 기업의 혜택

AEO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참여 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기에 현재 미국, EU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AEO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EO 제도를 도입하면서 AEO 제도의 국제적 법원(法源)인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규범 『SAFE Framework』」내 AEO 운영지침(Guideline)을 토대로 혜택을 설계하였다. 이 SAFE Framework는 4가지의 핵심요소를 전제로 하는

데 그중의 한 가지가 AEO 공인업체에 제공하는 세관의 혜택인 바, AEO를 위한 혜택은 SAFE Framework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며 궁극적으로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균형을 잡아주는 훌륭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등의 AEO 제도를 앞서 도입한 국가의 혜택 및 우리나라 고시 상의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AEO 인증시 혜택

가. WCO AEO Guideline 상 AEO에 대한 혜택

WCO의 AEO 운영지침은 AEO에 주어지는 혜택들의 성격과 운영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혜택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문서로 적시되어야 한다. 둘째, 혜택은 비AEO 업체들에 제공되는 절차들보다 나은 것 이어야 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 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혜택들은 의미 있으며 측정가능하고, 보고 가능(reportable)한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이 혜택의 사례⁶⁾들을 제시하고 있다.

A. 신속한 화물 반출, 운송시간 및 창고비용 절감 혜택

1. 화물반출에 대해 자료제출 생략 및 경감
2. 신속한 절차와 선적반출
3. 최소한의 화물검사
4.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검사 최우선 고려
5. 특정 수수료의 인하나 모범 AEO 업체에 대한 책임의 경감
6.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상시 협조요청 가능

B. AEO 업체에게 가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을 제공

1. 다른 참가업체의 동의하에 AEO 업체의 연락처와 상호를 제공
2.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명단
3. 확인된 안전관리기준과 우수사례(BP)의 공개

6)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06. 6.

C. 테러발생 등 위기상황에서의 특별한 조치

1. 고조된 위기상황 동안 세관 절차상에 있어 최우선 고려
2. 항구나 공항을 폐쇄하거나 재개할 경우 절차에 있어 최우선 고려
3. 사고 이후의 수출재개에 있어 최우선권 부여

D. 새로운 종류의 화물절차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최우선 고려

1. 건별 통관이 아닌 기업별 통관절차
2. 단순화된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제도
3. 자율심사 자격이나 경감된 심사제도
4.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절차 질의해결에 대한 신속한 과정
5. 과태료적 행정벌에 대한 경감
6.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P/L 절차 보장
7. 세관의 법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최우선적 답변
8. 원격세관통관에 대한 자격부여
9. 수정전송, 과태료적 행정벌 부과 전 종결
10. 지체된 관세의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칙이나 변제손해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나. 미국의 C-TPAT 회원에 대한 혜택

미국의 C-TPAT 제도는 “반테러 민·관 협력(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로서, 물품의 안전확보 목적의 검사율 경감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그러한 혜택도 인증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입되는 각각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대신 CBP는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선별하기 위해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점수를 이용하는데, ATS에 의해 고위험 컨테이너를 확인하면 해당 컨테이너에 부여할 보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B/L 요청, X-Ray 검사, 개장 및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업체가 C-TPAT Tier 1으로 인증 받으면 즉시 ATS 점수가 낮아지고 CBP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표 3〉 미국의 C-TPAT 회원의 혜택

구분	주요 내용
Tier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ST⁷⁾ Lane 절차를 통한 신속한 국경 화물처리 - Trade Act of 2002⁸⁾ 위반에 대한 처벌 경감 - 자율심사업체(Importer Self-Assessment : ISA) 자격 부여 - 공급망 보안 세미나 참여 - 회원과 CBP 사이에서의 연락처로서 공급망보안전문가 (Security Chain Security Specialist : SCSS) 지정 및 지원 프로그램 수행 - 통합관리시스템(SVI : Status Verification Interface⁹⁾)을 통한 C-TPAT 회원간 정보공유 등의 혜택 - 강화된 물리적 컨테이너 보안 및 개선된 보안 - 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인한 도난 감소, - 개선된 공급망 투명도 및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및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증가시키는 간접적 혜택
Tier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er 1 인증업체가 받는 화물 검사율보다도 더 적은 화물 검사율 적용 - 반입 항구에서 화물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 Tier 3 인증업체 다음으로 먼저 검사를 받게 됨. - Tier 1 인증업체가 얻게 되는 모든 혜택
Tier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검사의 추가 감소 - 화물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우선 검사 배정 - 공동 사고관리 훈련 참여 등의 혜택 - 미국 항구에서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Green Lane”¹⁰⁾의 사용권한이 부여 - Tier 1, 2 인증업체가 얻게 되는 모든 혜택

7) FAST(Free and Secure Trade)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 기업 중에서 CBP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통관제도이다.

8) Advance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System-Trade Act 2002는 해상화물에 대한 24 Hours-Rule의 개념을 모든 화물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본 법343조에 따라 미국 반출입 모든 화물의 정보를 도착 또는 출발 전에 EDI 시스템을 통해 CBP에 제출해야 한다.

9) SVI는 C-TPAT 비즈니스 파트너의 참여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회원간 사용자인터페이스이다.

10) “Green Lane”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시 가장 빨리 복구되는 무역경로(trade lane)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인증된 회원에 대해서 물품 선적시 검사절

다. EU의 AEO 업체에 대한 혜택

무역안전에 치중하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AEO 제도를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에 걸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① 세관 통관 절차의 간소화

AEO는 물리적 통제 및 서류기반 통제의 완화 혜택을 얻게 되는데, 이는 AEO 업체의 화물이 비(非)AEO 업체에 비해 신속하게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이신고서¹¹⁾ 또는 세관신고서가 제출되면 물품을 추가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선별하게 되는데, 이때 AEO의 물품은 여타 비(非)AEO 업체의 물품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고, 세관은 AEO가 저비용·시간단축이 가능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효과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AEO는 당해 업체가 속한 공급망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AEO 인증업체가 된다는 것은 업체의 평판 개선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AEO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업파트너로서 선정되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영업 및 매출증대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도난 및 손실이나 선적지연 감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직원들의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안전사고의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문제 감소, 공급망 파트너와의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차를 생략하여 화물흐름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Freight Forward International, FFI Questions CBP's "Green Lane" Benefits, Brussels, 21 February 2005).

11) 간이신고는 공동체 관세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신고서에는 관련된 상황 및 운송형태에 따라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신고에 의한 혜택은 2009년 7월 1일부터 "AEO-세관절차간소화 인증" 또는 "AEO-세관절차간소화/보안 및 안전 인증"의 경우 적용된다.

③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혜택의 범위 증대

EU가 AEO 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AEO 프로그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와 AEO 안전에 대한 상호 인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는 EU의 AEO에 주어지는 혜택이 협약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WCO의 대부분 회원국들이 WCO SAFE Framework을 이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등한 조치의 이행 및 상호간 인정의 혜택이 가능하다.

2)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혜택

우리나라는 AEO 공인업체에 제공되는 혜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WCO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첫째, 공인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는 공인을 받지 못한 공급망 당사자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둘째, 공인업체 내에서도 혜택이 모든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업체의 인증 등급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셋째, 공급망 당사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AEO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넷째, 현재 공급망 당사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WCO의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AEO 공인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화물검사의 완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납세부담 경감 및 기타 혜택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출입업체 등 9개 신청업체 대상별로 제공하고 있다.

가. 수출입 프로세스 상 혜택

수출입화물의 물류 흐름을 표준화하여 세분하면 입출항/하역, 입출항지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통관 등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AEO 공인업체에 제공되는 편의는 적하목록 자율정정, 화물검사 생략, 보세운송신고 심사면제 등의 절차 간소화와 통관단계에서 신용담보 한도액 증액 등과 같은 납세부담 감경 혜택 등이 있다. 이러한 세관의 편의제공에 따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는 화물 운송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화주기업에게는 통관 상 납세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비용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 4〉 수출입 프로세스 상 혜택 요약

단계	입·출항/하역	입·출항지 반입	보세운송	통관
세관 편의 제공	적하목록 자율정정 입항선박 출무검사 생략	화물검사 생략	보세운송신고 심사면제	신용담보 한도액 증액 월별납부 허용 보세공장 원료과세 포괄승인 ERP 연계신고 허용 P/L신고, 자율정정 허용 등 절차간소화
화주 혜택	화물 운송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가시성 확보	화물 운송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가시성 확보	화물 운송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가시성 확보	화물 운송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화물의 가시성 확보
물류 기업 혜택	하선, 하역, 운송 대기시간 단축	운송 대기시간 단축	운송 대기시간 단축	소요 인건비 절감

나. AEO 인증업체의 법령상의 혜택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에 대한 법령상의 혜택은“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고시에서 규정한 9개 분야¹²⁾의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 상에서 등급별 차등적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표 5〉 AEO 인증업체의 등급별 혜택(공통기준 발췌)

대상 업체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A	AA	AAA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 현행법,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	○	○

12)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인,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체,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를 신청대상으로 규정함.

대상 업체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A	AA	AAA
모든 업체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심사 가능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과태료 경감 * 시행세칙 별표 1 내지 3의 부과금액 중 해당연도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를 추가 경감 *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운영에관한시행세 칙」에 따른 여행자검사대상 선별제외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대표자	○ 대표자
	조달청의 「정부물품구매 적격업체 신인도 평가」에서 0.5점 가산	○	○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	○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우대조항에 의한 납세유예	○	○	○
	「관세법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0%	15%	25%
	「외국환 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 현행법,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관세청 감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자율시정	○	○	○

IV. AEO 인증제도의 도입 시 기대효과

AEO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국내적 효과와 국제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인 효과로는 수출입 화물과 관련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입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요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외환도피사례, 원산지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반입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세관신고가 정확하고 법규준수도가 높아 신뢰성이 검증된 AEO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검사생략 등의 관세법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때 절감된 행정력을 우범도가 높은 기업에게 투입하여 불법원산지물품, 환경 유해물품 등 국민건강 및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우범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할 차등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기업차원의 위험관리 뿐만 아니라 AEO는 거래업체 관리가 공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수출입 기업을 포함한 무역 공급망 전체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AEO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아직 AEO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조사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C-TPAT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미국 AEO 기업의 긍정적 효과분석

분야	효과	분야	효과
운송시간	29% 단축	재고 초과현상	14% 감소
화물의 적시 인도	30% 향상	화물 절도 방지효과	37% 향상
문제해결 시간	31% 단축	화물의 가시성 (Visibility)	50% 증진

반면, 국제적인 효과로는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어 수출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비록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일지라

도, AEO업체로 공인받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확보된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수출업체에게 무역거래의 조건으로 AEO 공인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실제로 해당 수출기업의 현장실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AEO는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청도 AEO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상대국과 상호인정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AEO 인증신청 대상인 수출입업체 및 물류기업 입장에서 AEO 인증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은 AEO 인증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대비 실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AEO 인증 과정에서 세관 당국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 요건¹³⁾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 율타리설치 등과 같은 시설비용 및 수출입 안전관리 인력 채용 같은 인적 비용 등이 수반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충족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은 AEO 인증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marginal cost)과 비(非)AEO 업체로 남는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 비용에 대한 실익을 경영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AEO 인증업체가 되지 않으면 AEO 업체에 비해 통관상의 비용의 추가 부담 및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바, 양자의 비용대비 실익을 비교해 볼 때 AEO 공인에 드는 비용이 적다면 과감히 AEO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인식하고 AEO 인증을 통한 혜택을 향유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

13) AEO 가이드라인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AEO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약 1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AEO 인증 신청업체가 많지 않고, 타당성 검토 등 신청 준비부터 최종 인증까지의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선점효과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 필수조건 AEO”, 2009.
- 강태일, “AEO의 혜택에 관한 소고”, 관세와 무역, pp. 17-18. 2010. 4.
- 김도열, “AEO 상호인정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관세와 무역, pp 9-10. 2010. 8.
- 김중구, “위험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원앤원북스, 2009.
- 김진규, AEO 국제인증제도 가이드, TSPL PRESS, 2010.
- 남풍우·안재진,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제2호, pp. 313-314. 2008.12.
- 남풍우·최준호, “관세법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사의 역할증진 방안,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pp. 49-64. 2008.12.
- 남풍우·안재진,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제2호, pp. 317-318. 2008.12.
- 안재진, “수출입물류보안(AEO) 프로그램 세관간 상호인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pp 73-98. 2008. 8.
- 한국수출입은행, “AEO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Vol. 2009-11, 2009.12.
- 한낙현,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위험관리에 관한 도찰”,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0권, pp59-61. 2006.5.
- CBP, "Cost/Benefit Survey Report of Result", University of Virginia, 2007.
- CBP, "Supply Chain Security in a New Business Environment", 2008.
- Stephen P.D'Arcy, "Enterprise Risk Management", Risk Management Study, 2001.
- World Customs Organization,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Geneva,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Benefit and Expected Effect of Introducing an AEO Programmes

Kim, Jin Kyu
Kim, Hyun Jee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has designed standards to secure and to facilitate the ever-growing flow of goods in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9.11 terrorism in U.S.A. These standards are set forth in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was adopted by the WCO Council at its 2005 Sessions and the SAFE Framework incorporates the concep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nd the Council directed the WCO to develop more detaile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the AEO concept.

It is considered to be reliable in customs-related operations and ensures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in customs controls for goods brought into or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whereas it is difficult for many Korean companies to make a decision of introducing the AEO certification programs because of a lack of cost and benefit information.

In this article, We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ing status of an AEO programmes and have studied the benefit and expected effec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mpanies to be certified the AEO programmes from Korea customs service for increasing security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through risk management and customs compliance, in addition, the key-driver in the future will be expectation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o work with AEO partners.

Key words : AEO Programmes, C-TPAT, Customs Clearance, Security